

납부한다.

특히 여러 회사의 퇴직소득이 한 연도에 있었는데 합산신고하여 퇴직정산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있게 마련이므로 자진납부해야 퇴직소득 납세의무가 완벽히 이행된다.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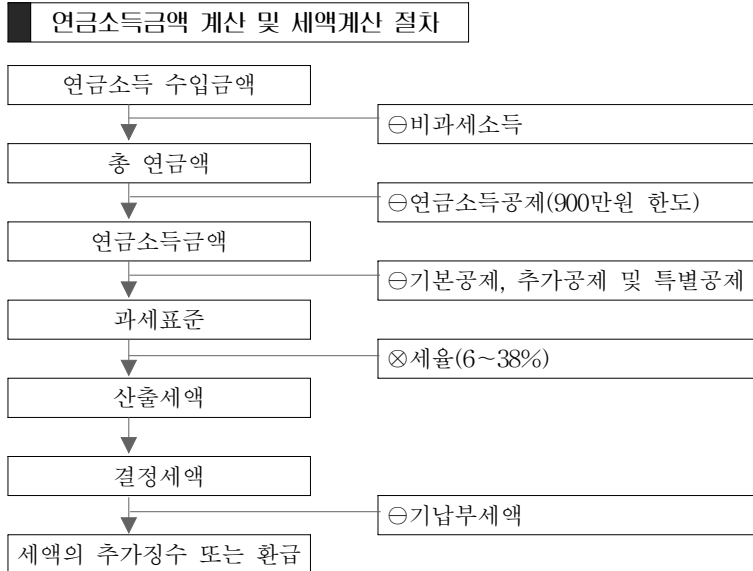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2. 연금소득 과세방법

1) 연금소득의 범위

(1) 연금소득의 개념과 종류 및 과세방법절차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은 연금불입자의 퇴직이나 사망 등으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후의 연금수취소득 등이 있다. 또한 연금소득의 경우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그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
 -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12. 27 개정)
 -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① 소득과세되는 공적연금소득의 범위

국민연금법에 의한 각종 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연금소득 중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연금소득이 과세된다.

그러나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노령연금 등으로서 연금소득 과세대상인 경우라도 일시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 등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도 연금소득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장애연금, 상이연금은 비과세대상이며(소득세법 제12조제4의3호나목), 퇴직연금 등으로서 연금소득 과세대상이라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② 소득과세되는 사적연금소득의 범위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퇴직보험의 일시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종전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해 왔으나 연금소득으로 과세전환되었다. 따라서 퇴직보험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보험을 말한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및 퇴직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및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도 연금소득에 포함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이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② 법 제2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에는 퇴직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퇴직보험 등의 유효기간】

(2005. 1. 27 법률 제7379호)

-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2005.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퇴직연금이 연금소득으로 과세전환되었는데 그동안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낮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 전환으로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이 불리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과세시기를 퇴직소득 세액공제가 폐지되는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04년까지는 퇴직소득으로서 과세된다.



● 소득세법 부칙 제19조 【퇴직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2000. 12. 29 법률 제6292호)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이를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연금저축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러한 개인연금저축에 의한 수령액 중 이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연간 400만원 한도)과 이자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즉 연금저축으로 불입가능한 금액은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이지만 연 4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되므로 소득공제 적용이 안된 금액은 이미 과세된 금액이므로 과세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향후 연금소득 계산시에도 이미 소득공제된 연 400만원 공제금액과 총 연금수령액에 대한 이자부분만을 합산하여 과세한다(조특법 제86조의2 참조).

2) 과세대상소득과 연금소득 과세방법

(1) 기존 공적연금가입자 보호

기존 불입분은 비과세

소득공제받지 못한 기존 연금불입자의 소득이 앞으로 소득공제받게 되는 신규연금가입자와 과세형평차원에서 연금소득금액은 2002. 1. 1 이후 불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만이 과세 대상이며, 기존 불입분은 소득공제 적용되지 않았었으므로 비과세된다.

즉 2002. 1. 1 현재 연금수령자는 비과세가 되며, 2002. 1. 1 현재부터 불입자의 경우도 2001. 12. 31까지이며 불입분에 관한 소득·연금액은 비과세된다.

(2) 연금소득금액 계산

과세되는 국민연금액 산출기준

과세대상이 되는 국민연금소득은 2002. 1. 1 이후 가입기간 불입금 중 소득공제를 받은 불입금이 차지하는 환산소득이 총 불입기간 불입금의 환산소득에서 점유한 비율에 의해 과세된다.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연금액 =

$$\text{총수령액} \times \left(\frac{\text{2002. 1. 1 이후 불입기간동안 환산소득의 누계액}}{\text{총불입기간동안 환산소득의 누계액}} \times \{1 - [\text{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 / \text{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동안 불입한 연금누계액}] \}$$

과세대상 일시금 =

2002. 1. 1 이후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여기서 환산소득이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에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도 연금소득인데, 수령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액에서 본인 불입분 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2010. 2. 18 개정)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1 -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퇴직연금(「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았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은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text{과세대상 연금소득} = \text{총수령액} \times \frac{\text{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text{총기여금 불입월수}}$$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받았다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2010. 2. 18 개정)

$$\text{과세대상 연금소득} = \text{총수령액} \times \frac{\text{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text{총기여금 불입월수}}$$

4. 법 제2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 (2010. 2. 18 개정)

$$\text{과세대상 연금소득} = \text{총수령액} \times \left(1 - \frac{\text{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text{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right)$$

④ 제3항제1호에서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연금소득공제후 연금소득금액 계산

매 연도의 과세연금액에서 연금액 구간별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연금소득금액이라 하며 여기서 기본공제 등을 뺀 후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연금소득공제의 연간 한도는 900만원이다.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총연금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2009. 12. 31 개정)

공무원연금 등의 산출기준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기여금불입월수가 총기여금불입월수에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재임용된 공무원이 재직기간을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수령한 퇴직금을 반납하여야 하는데, 반납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당초 퇴직시 과세되었으므로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또는 일시금=

총수령액×(2002. 1. 1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기여금 불입한 총근무월수)

재임용된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시의 과세대상 연금소득=

총수령액×재임용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3) 비과세 연금소득

유족연금·장애연금

국민연금법 규정상 지급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 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또는 상이연금(傷痍年金)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 퇴직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장애연금·상이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받는 장애연금·상이연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 연금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4) 연금소득 과세방법론과 원천징수

(1) 연금소득 적용세율과 원천징수방법

① 공적연금소득의 원천징수방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각종 연금의 공적연금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① 연금소득 지급시 미리 정해진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②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 지급시 1년간의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연말정산방법에

의한다.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9. 12. 31 개정)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별 원천징수 예남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때 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5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법 제1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신설)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연도 중간의 매월에는 연간 소득금액·소득공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액을 확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매월분의 연금이 12월까지 균등지급되고, 소득공제사항이 연중 변동이 없을 경우의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별로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해당란의 세액을 찾아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 련 법 령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6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2008. 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① 삭 제 (2011. 3. 28)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 1.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 2.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1인으로 보아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 제20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동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중예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이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소득분부터 당해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007. 4. 17 개정)
 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 (2001. 4. 30 신설)

연말정산에 의한 정산 원천징수로 종결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분을 간이세액조건표에 의거 원천징수한 금액을 1년분 합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즉, 연금소득금액이 월별로 변동이 있고 소득공제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별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연도 1월에 과세요건이 확정되었을 때 이를 연
합산정산하는 것이다. 정산시 각종 공제를 적용하며 세액공제·원천징수세
액 등도 차감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 ②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
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
 -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②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의 원천징수방법**

지급금액×5%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등의 사적연금을 지급하는 때
에는 총 지급금액에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
징수한다.

관련 적용세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

연금소득 종류	원천징수세율
공적연금(법 제129조 제1항제5호가목)	기본세율(6%~38%) * 매월분의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퇴직연금 ○ 연금저축	연금소득금액×5%

(2)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지급 약정시점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 지급받기로 한 날이라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3)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매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

연금소득지급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소득자별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43조의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 1.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2. 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연금소득 :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중도사망자는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

연금소득자가 당해 연도 중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5)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방법

(1) 연말정산시기와 정산방법

각 법률에 의해 각종 연금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43조의4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2009. 12. 31 개정)

연말정산 방법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 지급하는 때에 연금소득금액에서 그 연금소득자가 소득공제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하고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각 법률에 의한 각종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3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001. 4. 30 신설)

(2) 소득공제범위와 초과징수의 원금

원천징수초과액은 연말정산시 환급

당해 연도에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 즉 매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기납부한 세액이 연말정산 결과의 당해 연금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연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3조의4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공제내용 미신고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

연말정산대상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연금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액을 받기 전에 본인의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3조의4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중도사망시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연금소득자가 당해 연도 중에 사망시 다음 연도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당연도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정산환급한다.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제143조의4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연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분리과세종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 6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하여도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제143조의4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⑤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의 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3)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초과하는 세액은 다음 달 연금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결과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하면 초과세액(징수할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면서 차감방법으로 원천징수한다.

또한 징수할 소득세가 연금지급액 초과시에는 다음 달로 계속 이월징수한다.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제143조의5【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2009. 12. 31 개정)

(4)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연금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도사망시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27 신설)

②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③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에 관하여는 제198조제2항을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연금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매년 수기로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보통신망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제공하고 연금소득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열람·승인하는 것으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해당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④ 연금소득자가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오류가 있는 경우 연금소득자가 해당 오류를 수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는 해당 연금소득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로 본다. (2008. 2. 22 신설)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의 열람 및 수정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첨부

소득공제신고서 제출에 있어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형편 등의 이유로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② 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미제출시는 기본공제와 표준공제(연 60만원)만 공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당해 연금소득자의 기본공제와 표준공제(연 60만원)만 적용하여 계산한다.

연금소득금액계산을 위한 소득공제 자료 제공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연금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확인이 필요한데, 연금보험료공제 내역의 보관 및 자료제공을 국세청이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소득자가 직접 소득공제내역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신청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자의 동의를 받아 소득공제자료를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❶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자료 제공】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제4호·제5호·제6호(연계노령연금만 해당한다)에 따른 연금소득, 법 제21조제1항제18호·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또는 제42조의2제1항제6호와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퇴직소득이 발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소득공제자료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1. 제40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2. 제42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연금소득자등에게 해당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등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2008. 2. 22 신설)